
남 일 ~ 보 은 (제 1 공 구) 도 로 건 설 공 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0. 10.



국 토 교 통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안)(2016~2020)」을 수립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22건 가운데 84건에 대해 타당성재조사 수행(‘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2016.12, KID’)을 실시하였음
 - 남일~보은(제1공구)는 타당성재조사 사업에 해당
- 도로 안전성 평가에서는 잠재적 사고 위험도 평가, 실제 사고 위험도 평가, 이를 종합한 종합 위험도 등을 평가하였음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낮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로의 기하구조 조건이 불량하여 도로의 안전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위험도로 여부를 판단
- 본 계획노선인 ‘남일~보은(제1공구)’에 대한 잠재적 사고위험도 및 실제 사고위험도를 종합한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연장비율 95.98%로 조사되었음

〈표 1-1〉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사업 노선	사업 구간	사업 연장 (km)	총조사 연장 (km)	잠재적 사고위험도		실제 사고위험도		종합 위험도	
				위험구간 연장(m)	연장 비율(%)	위험구간 연장(m)	연장 비율(%)	위험구간 연장(m)	연장 비율(%)
국도25 호선	남일~ 보은1	11.9	13.27	4,875	36.75	11,299	85.17	12,734	95.98

자료)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2016.12, KDI

1.1.2 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계획은 국도25호선 중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구간의 선형불량 등에 따른 교통위험도가 높아 일부구간 신설 및 기존도로 개량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본 계획은 당초(’04년 환경영향평가 완료시) 4차로 신설 → 금회 2차로 시설 개량으로 현재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성 확보를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당초(왕복 4차로 : L=25.22km, B=20.0m, V=80km/hr) 2002년 05월 11일 사전환경성검토(금강유역환경청) 협의완료, 2004년 12월 29일 환경영향평가(금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나,
- 청원(청주)~상주 고속도로와 중복으로 인해 보류되어 당초 협의완료한 지역이 도로구역으로 미지정(도로구역 미고시) 되어 있으며,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16~20) 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3호)’에 의거 2차로 시설개량으로 변경되어 금회 신규 도로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음
- 따라서, 본 계획의 경우 기존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후 도로구역 미고시 등 지연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해당하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함
- 한편, ‘남일~보은(제2공구)’는 연장 10.0km 구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15년도) 및 환경영향평가(15년도) 협의 완료 및 착공(2017.07.18)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음

〈표 1-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재협의) ②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1호 및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표 1-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전략환경 영향평가)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71조 또는 73조에 따른 기본 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 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노선	○ 계획노선 : 총 연장 11.4km(신설 : 약 5.6km, 확·포장 : 약 5.8km)	

〈표 1-4〉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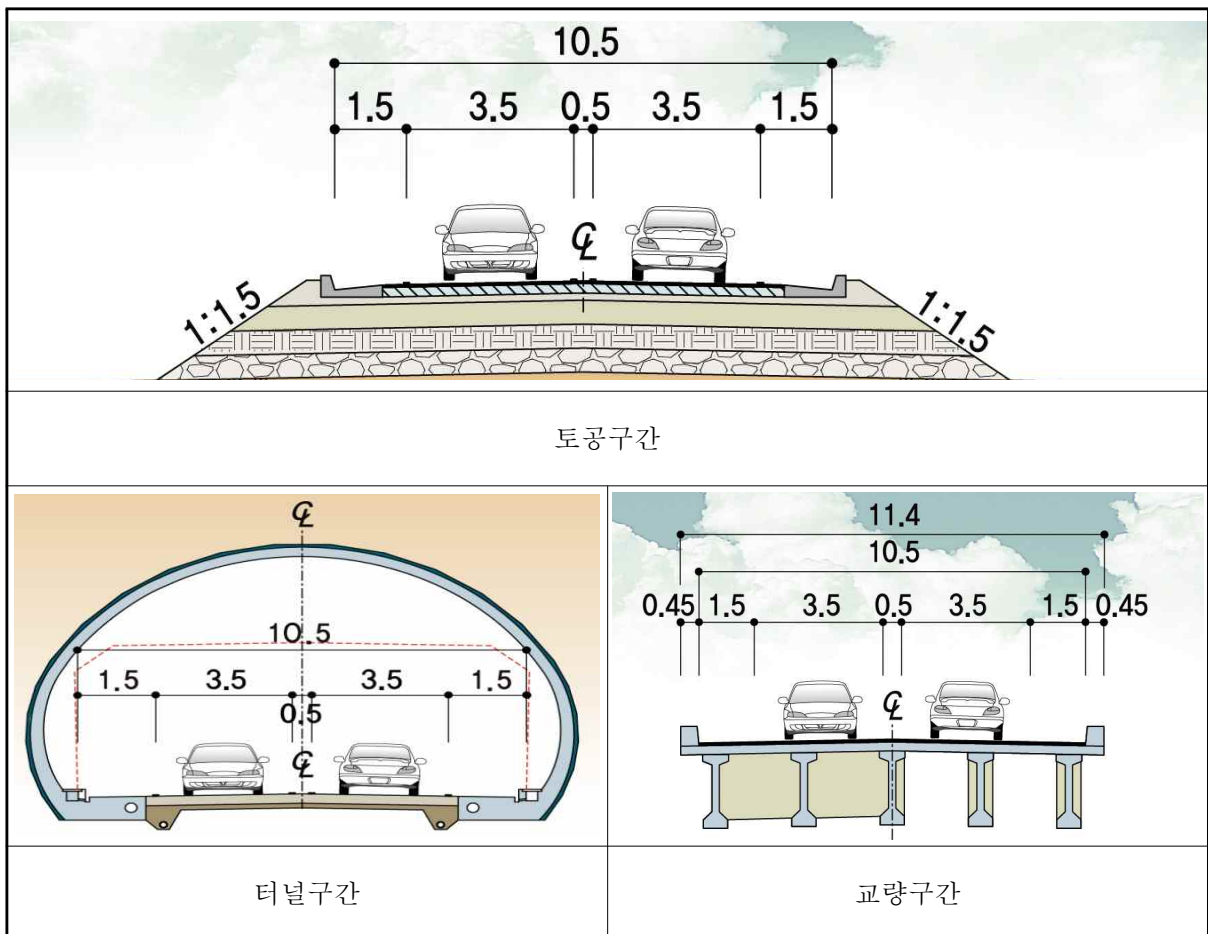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표 1-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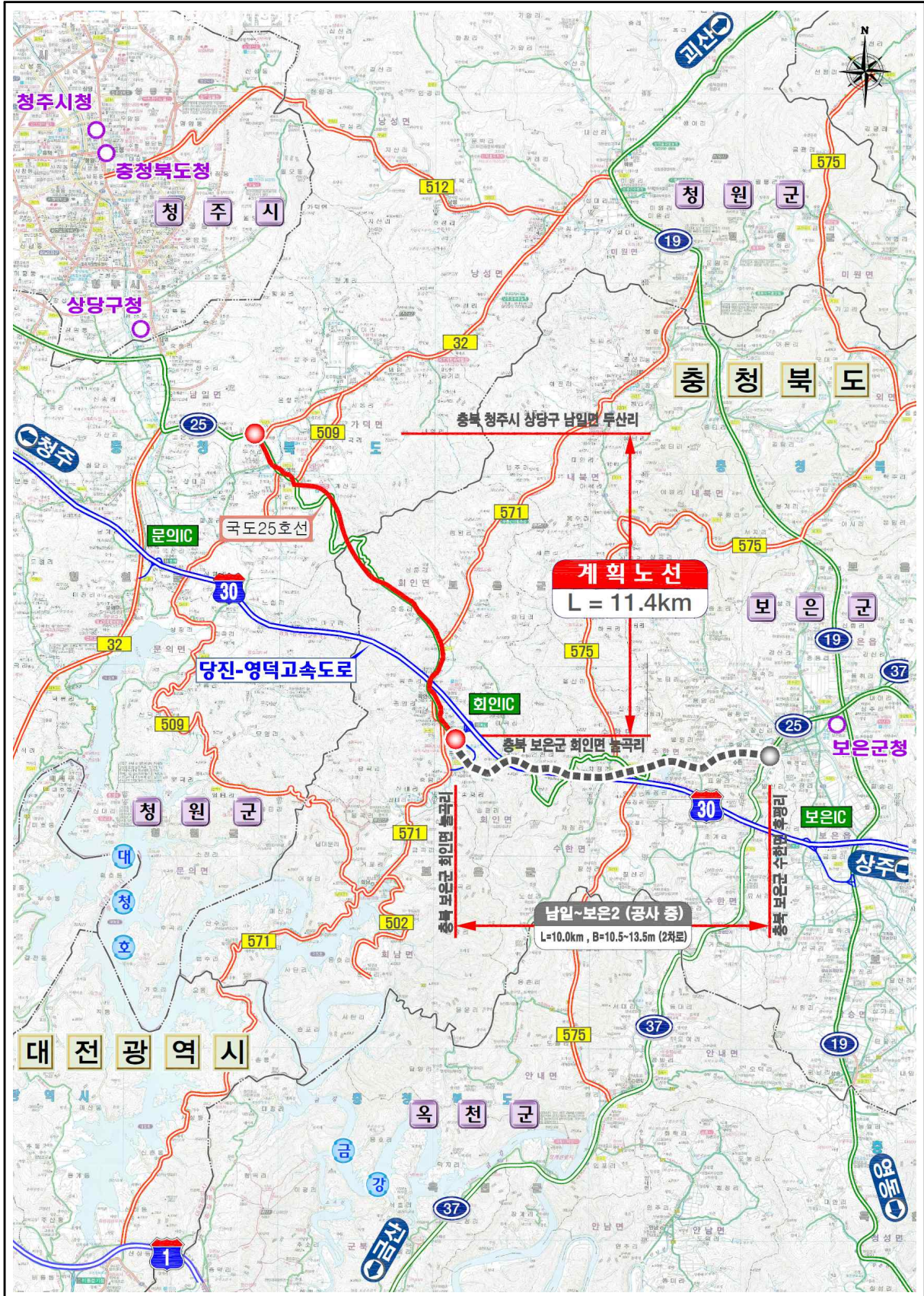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전
계획노선	○ 계획노선 : 총 연장 11.4km(신설 : 약 5.6km, 확·포장 : 약 5.8km)	

1.3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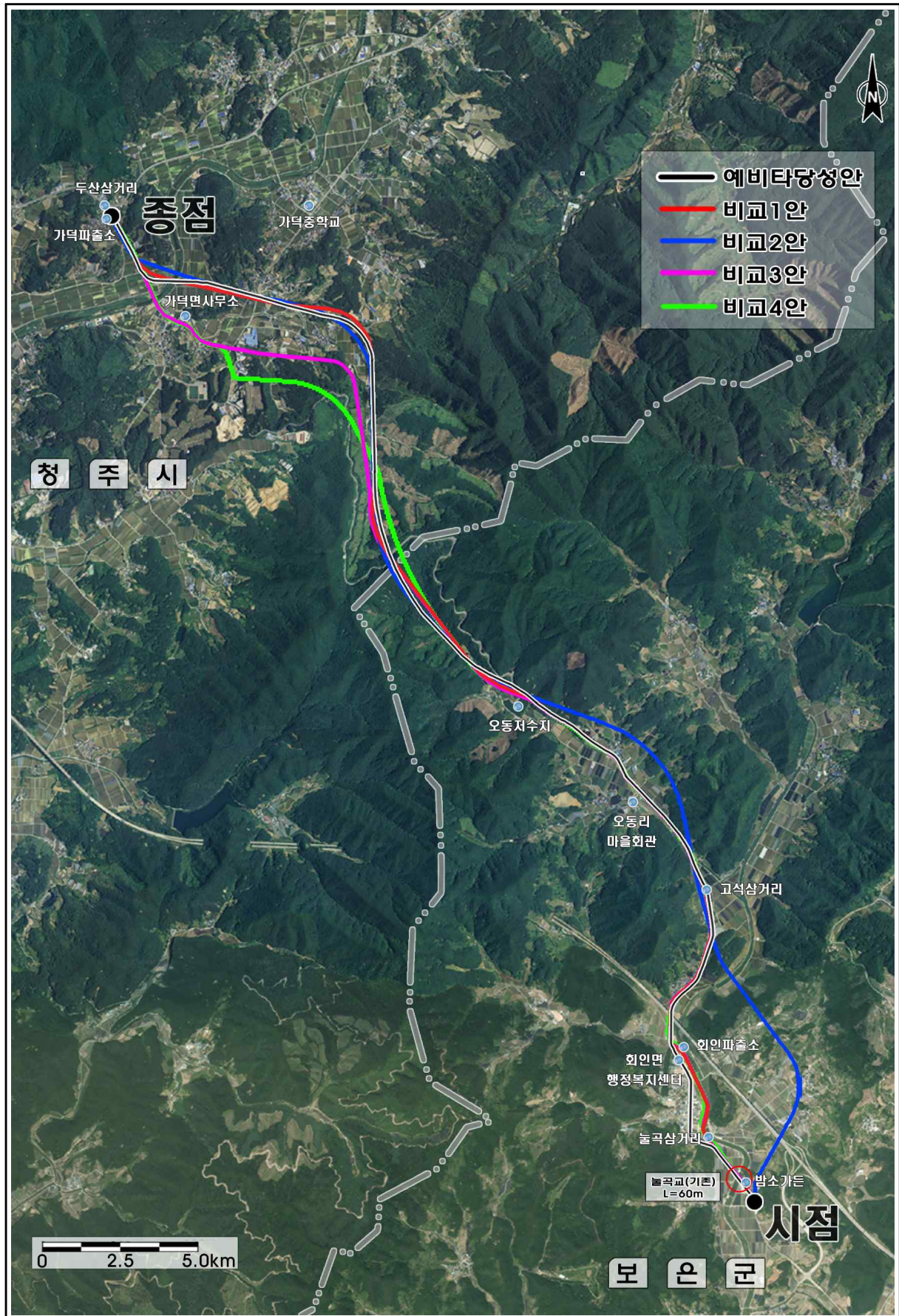
- 계획명 :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위치 : 시점-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점-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 규모 : 연장 11.4km, 폭원 10.5m(2차로), 설계속도 60km/hr(보조간선도로)
- 공용개시연도 / 목표연도 : 2027년 / 2047년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계획의 범위(비교4안 기준)
 - 선형 : 최소 곡선반경 R=140.0m, 최대 종단경사 S=5.95%
 - 토공 : 깎기 380천^m (암버럭 155천^m), 쌓기 403천^m
 - 구조물 : 터널 2개소(1,550m), 교량 5개소(250m)
 - 사업비 : 995억원(시설비 약 920억원, 보상비 약 75억원 등)



(그림 1-1) 표준횡단면도



(그림 1-2) 계획노선 위치도(비교4안 기준)



(그림 1-3) 계획노선 위성사진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2.1 의견수렴 개요

2.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근거

- 계획시행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1.2 의견수렴 내용

- 개최 결과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계획내용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원활하게 정상 진행·완료되었으며,
 - 가덕면은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음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구 분	내 용
공람 및 공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77호 ○ 공람일자 : 2020년 05월 28일 ○ 공람기간 : 2020년 05월 28일 ~ 06월 26일 ○ 신문공고 : 아주경제, 중부매일 ○ 정보통신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청주시청(환경정책과, 도로시설과), 청주시 상당구청(환경위생과, 건설과), 가덕면사무소, 보은군청(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회인면사무소
1차 주민설명회	○ 20년 06월 09일 : 가덕면 행정복지센터(10시) ○ 20년 06월 10일 : 회인면 행정복지센터(10시)
2차 주민설명회	○ 20년 07월 22일 : 가덕면 행정복지센터(14시)

2.1.3 공고내용

○ 신문공고

ajunews.com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제 3131 호
창간 2007년 11월 15일

아주경제

한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 5개 국어로 통하는 글로벌 미디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77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및 노선계획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공고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및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놀곡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규모: 2차로 시설개량(연장L=11.8km, 폭원B=10.5m)

2. 사업의 필요성

- 신형불량 구간 개선 등 도로시설개선 필요

3. 사업의 효과

- 도로시설개선으로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유도

4. 사업기간

- 설계기간: 2019. 2. ~ 2021. 11.(24개월), 공사기간: 2021 ~ 2027(84개월)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894	3	100	150	200	200	150	91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예산화보 시기에 따라 유동적임.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20. 05. 28 ~ 2020. 06. 26(22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청주시청(환경정책과, 도로시설과), 청주시 상당구청(환경위생과, 건설과), 가덕면사무소, 보은군청(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회인면사무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요역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7.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2020. 06. 9(화) 10:00
- 보은군 회인면사무소 회의실: 2020. 06. 10(수) 10:00

8.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공람개시 후 ~ 공람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용역사(노선관련 한국종합기술 ☎ 02-2049-2823, 환경관련 동성엔지니어링 ☎ 02-2041-8793)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그림 2-1) 아주경제(일간지) 신문공고

중부매일

제 8529 호 jbnews.com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중부매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77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및 노선계획(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및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놀곡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규모 : 2차로 시설개량(연장L=11.8km, 폭원B=10.5m)

2. 사업의 필요성

- 선형불량 구간 개선 등 도로시설개선 필요

3. 사업의 효과

- 도로시설개선으로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형균형발전 유도

4. 사업기간

- 설계기간 : 2019. 2. ~ 2021. 11.(24개월), 공사기간 : 2021 ~ 2027(84개월)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894	3	100	150	200	200	150	91	

※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유동적임.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0. 05. 28 ~ 2020. 06. 26(22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청주시청(환경정책과, 도로시설과), 청주시 상당구청(환경위생과, 건설과), 가덕면사무소, 보은군청(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회인면사무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요약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7.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 2020. 06. 9(화) 10:00
- 보은군 회인면사무소 회의실 : 2020. 06. 10(수) 10:00

8.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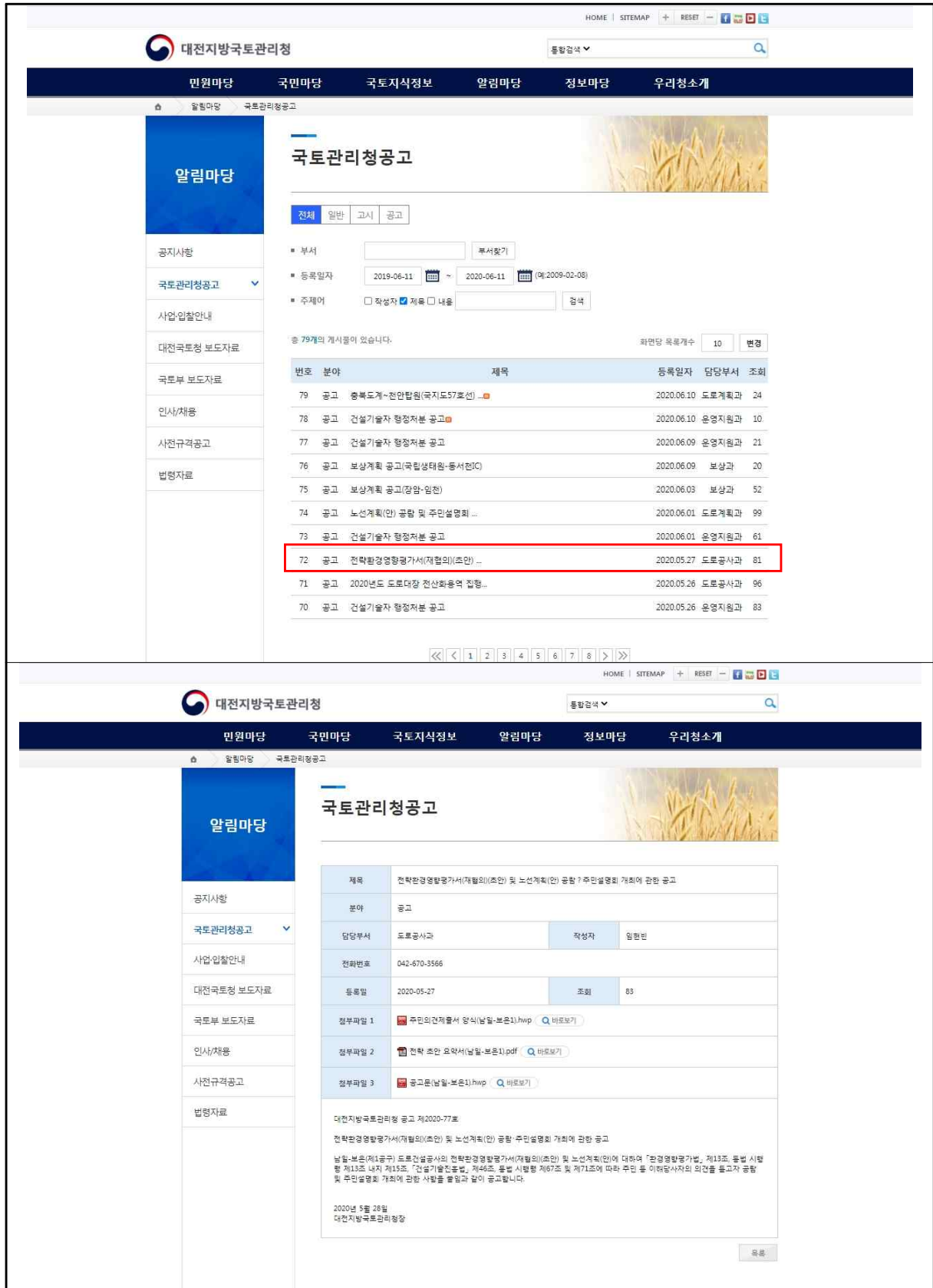
- 제출시기 : 공람개시 후 ~ 공람만료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용역사(노선관련 한국종합기술 ☎ 02-2049-2823, 환경관련 동성엔지니어링 ☎ 02-2041-8793)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그림 2-2) 중부매일(지방지) 신문공고

○ 정보통신망 공고



(그림 2-3)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77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및 노선계획(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및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규모 : 2차로 시설개량(연장 L=11.8km, 폭원 B = 10.5m)

2. 사업의 필요성

- 선형불량 구간 개선 등 도로시설개선 필요

3. 사업의 효과

- 도로시설개선으로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형균형발전 유도

4. 사업기간

- 설계기간 : 2019. 2. ~ 2021. 11.(24개월), 공사기간 : 2021 ~ 2027(84개월)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894	3	100	150	200	200	150	91	

※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유동적임.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0. 05. 28 ~ 2020. 06. 26(22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청주시청(환경정책과, 도로시설과), 청주시 상당구청(환경위생과, 건설과), 가덕면사무소, 보은군청(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회인면사무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요약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7.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 2020. 06. 9(화) 10:00
- 보은군 회인면사무소 회의실 : 2020. 06. 10(수) 10:00

8.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람개시 후 ~ 공람만료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용역사(노선관련 한국종합기술 ☎ 02-2049-2823, 환경관련 동성엔지니어링 ☎ 02-2041-8793)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용자지원
- Q&A
- FAQ
-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시/도

사업영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검색 조건바꾸기

※ 검색결과 : 5213건

번호	협의기관	사업명	공람기간
5203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영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0.06.04 ~ 2020.07.02
5202	금강유역환경청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2020.06.04 ~ 2020.07.01
5201	금강유역환경청	탄동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2020.06.03 ~ 2020.06.30
5200	한강유역환경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020.06.03 ~ 2020.06.17
5199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 소화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	2020.06.02 ~ 2020.06.22
5198	환경부	당진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준설토 투기장	2020.06.01 ~ 2020.06.29
5197	원주지방환경청	평창강 하류권역(분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2020.05.30 ~ 2020.06.26
5195	금강유역환경청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사업	2020.05.28 ~ 2020.06.26
5194	한강유역환경청	민천더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기과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20.05.28 ~ 2020.06.24

1 2 3 4 5 6 7 8 9 10 >>

환경부 KEI 환경평가검토정보 유관기관 관련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용약관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용자지원
- Q&A
- FAQ
-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명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사업			
사업위치	* 선형			
	소재지	면적	폭	연장
	시절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늘곡리 (보청대로 3360) 일대 중절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단제로 1105) 일대		10.5m	11.8km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 행정계획 [도로법]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사업구분	도로건설 / 도로의 건설공사 / 국도 (25호선)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규모 : 11.8km * 사업비 : 89150 백만원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	장성만
담당부서		E-mail	kd5408@naver.com
전화번호	042-865-0758	Fax번호	02--

■ 초안공람

(그림 2-5)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람(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2 의견수렴 결과

2.2.1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

○가덕면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의견 제출서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46명이었으며, 주민의견을 수용한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공청회 취하 의견제출서(46명 전원 서명)를 재제출함 →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장 소	일 시		참 석 자	공청회개최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1차	20.06.09(화) 10시	주민 약 44명, 지역 국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해당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2차	20.07.22(수) 14시	주민 약 13명, 관계공무원 등	해당없음 (취하)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1차	20.06.10(수) 10시	주민 약 18명, 관계공무원 등	해당없음



(그림 2-6)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번호	성명	주소	서명
1	이	상당구	2차
2	김	"	김
3	김	"	김
4	김	"	김
5	김	"	김
6	김	청주	김
7	김	"	김
8	김	이천	김
9	김	이천	김
10	김	이천	김
11	김	이천	김
12	김	이천	김
13	김	이천	김
14	김	이천	김
15	김	이천	김
16	김	이천	김
17	김	이천	김
18	김	이천	김
19	김	이천	김
20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번호	성명	주소	서명
21	김	이천	김
22	김	이천	김
23	김	이천	김
24	김	이천	김
25	김	이천	김
26	김	이천	김
27	김	이천	김
28	김	이천	김
29	김	이천	김
30	김	이천	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번호	성명	주소	서명
41	김	이천	김
42	김	이천	김
43	김	이천	김
44	김	이천	김
45	김	이천	김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보은군 회인면사무소 회의실

번호	성명	주소	서명
1	김	이천	김
2	김	이천	김
3	김	이천	김
4	김	이천	김
5	김	이천	김
6	김	이천	김
7	김	이천	김
8	김	이천	김
9	김	이천	김
10	김	이천	김
11	김	이천	김
12	김	이천	김
13			
14			
15			
16			
17			
18			
19			
20			

주) 1차 주민설명회 개최시에는 코로나19 방역책을 별도로 작성하였음
(그림 2-7)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보은군 회인면사무소 회의실

번호	성명	주소	서명
21	김민	보은읍	김민
22	김영	보은읍	김영
23	정	보은읍	정
24	박	보은읍	박
25	김	보은읍	김
26	김	보은읍	김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2차) 참석자명부

○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14시 30분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채운	호흡기 중상여부	서명
①	김민	보은읍	361-344	X		김민
②	김영	보은읍	361-358	X		김영
③	정	보은읍	362	X		정
④	박	보은읍	363	X		박
⑤	김	보은읍	364	X		김
⑥	김	보은읍	365	X		김
⑦	김	보은읍	366	X		김
⑧	김	보은읍	367	X		김
⑨	김	보은읍	368	X		김
⑩	김	보은읍	369	X		김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2차) 참석자명부

○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14시 30분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 다목적회관 2층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채운	호흡기 중상여부	서명
①	김민	보은읍	361	X		김민
②	김영	보은읍	362	X		김영
③	정	보은읍	363	X		정
④	박	보은읍	364	X		박
⑤	김	보은읍	365	X		김
⑥	김	보은읍	366	X		김
⑦	김	보은읍	367	X		김
⑧	김	보은읍	368	X		김
⑨	김	보은읍	369	X		김
⑩	김	보은읍	370	X		김
⑪	김	보은읍	371	X		김
⑫	김	보은읍	372	X		김
⑬						
⑭						
⑮						
⑯						
⑰						
⑱						
⑳						

주) 1차 주민설명회 개최시에는 코로나19 방명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음

(그림 2-8)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②

나.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1) 가덕면 1차

○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주민1 (이00)	<p>○ 현재 가덕면은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상주~국도 고속도로가 생기고 피반령 도로에 하루에 차가 50대도 다니지 않는 상황인데, 주말이 되면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p> <p>비교 1안, 2안이 선정이 된다면 가덕면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고려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으로 요청드립니다.</p> <p>기존 25호선 국도를 선형을 잡아서 터널을 뚫지 않고 도로를 내던지 인차리 끝, 계산리 인접부분과 도로를 맞물리게 도로를 내고, 인차리를 통과하면서 동네도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p>	2차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4안(추가노선)으로 선정하였음	
주민2 (인차리 이장 박00)	<p>○ 지난 주민설명회시 3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 피반령 도로만해도 수곡리는 편리합니다.</p> <p>지금 3안이 1안이나 2안보다 예산도 50%가 절감이 됩니다. 모든 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해달라는대로 3안으로 해주면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것입니다.</p> <p>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설계사무소는 주민들이 도로를 잘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안대로라면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p> <p>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고,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후대에도 잘 쓸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p>	상동	
주민3 (말미장터 김00)	<p>○ 비교 1안, 2안으로 하게 되면 주위의 발전이 쇠퇴해지며, 동네발전이 단절되고, 말미장터라는 동네는 주말이 되면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p> <p>만약 앞뒤로 도로가 나게되면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현재 도로를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하지 못할것 같으면 피반령 도로에 터널을 개설해서 비교 3안과 인차리 도로와 연결하면 됩니다.</p> <p>원래 계획대로 하게 되면 동네와 동네와 단절이 되고,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말미장터 주민, 인차리 주민, 면사무소 소재지 주민들은 전부 반대합니다.</p> <p>다시한번 생각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설명회를 열었으면 합니다.</p>	상동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주민4	<p>○ 비교 3안과 수곡리에서 접근하는 데는 불과 200~300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수곡리에서 접근성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안도 지방도 509호선과 연결시켜서 교차로 신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p> <p>또한,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농민들이 다닐수 있는 보도 내지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기길 바랍니다. 3안을 선정해야 도로를 지나면서 소재지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소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p>	<p>2차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4안(추가노선)으로 선정하였음</p>	
주민5	<p>○ 13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주말이면 현재 도로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축사랑 길에서 20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염소)이 놀래고 집에서 누워 있으면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p> <p>여기서 길이 더 생기면 너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p>	상동	
주민6 (계산리 박00)	<p>○ 저는 장터소류지위에 살고 있습니다. 25번 국도랑 직선거리로 100m 떨어져 있는데 안그래도 소음이 심한 상황입니다. 바로 코앞에 도로를 낸다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p> <p>25번국도가 시속 60키로 국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60키로로 달리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100키로, 자동차는 80키로로 달려서 사고가 나는데 왜 이런 것을 막지 않고 도로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p> <p>사고 이유를 먼저 조사하여서 교통법규를 지키게 만들면 사고위험성을 줄어 들 것입니다.</p>	상동	
주민7 (계산리 유00)	<p>○ 말미장터, 계산리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말미장터로 길을 뚫는지 모르겠습니다.</p>	상동	

○ 주민의견 제출서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공청회 개최
박00 (인차리) 외 33인	○ 환경과피 및 지역경제 후퇴 우려농지 잠식으로 가덕면 소재지를 더 낙후시킴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더 후퇴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25선 도로 보강공사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대로 제3안을 확정하여 가덕면 사무소 앞 도로와 연결하여, 지역주민들과 가덕면 소재지가 지금보다 더 이상은 낙후하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정을 바랍니다.	2차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4안(추가노선)으로 선정하였음	○
유00 (계산리)	○ 가덕면 소재지 발전을 위하여 제3안으로 추천함.	상동	-
이00 (청용리)	○ 3안으로 도로를 설치 건설 요망합니다.	상동	-
박00 (삼향리)	○ 남일~보은간 도로건설공사에 제3안으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김00 (삼향리)	○ 제3안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가덕면 소재지의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활동이 원활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제3안을 주장합니다.	상동	-
박00 (미원리)	○ 도로의 기능만 강조되어 면단위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므로 제3안을 요청합니다.	상동	○
정00 (금거리)	○ 면사무소 앞으로 통과해야 한다. 3안으로 내길 바랍니다.	상동	×
류00 (삼향리)	○ 도로가 개통이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대로 3안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상동	○
신00 (추정리)	○ 가덕면 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비교 3안으로 평가를 요구합니다.	상동	-
유00 (내암리)	○ 도로가 개통이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대로 3안으로 해야합니다.	상동	○
임00 (상대리)	○ 초안은 불허합니다.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가덕면의 면소재지를 활성화 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안은 소재지를 죽이는 안이기에, 공청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임00 (인차리)	○ 초안은 면소재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을 더 분산시키며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안이기에 불허합니다. 안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공청회 개최
이00 (한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은 가덕면의 소재지를 분산시키며 활성화 되지않은 면소재지를 더 죽이는 안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봄. ○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의견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4안(추가노선)으로 선정하였음	○
고00 (청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되지 않는 계획임. ○ 면사무소 소재지를 통과하는 3안으로 변경요망. 	상동	-
박00 (청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제 3안 가덕면, 발전. 	상동	-
신00 (한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소재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덕면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음(가덕이 침체되어 있음) ○ 면소재지를 통과할 수 있는 3안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상동	-
노00 (시동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안 찬성.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도로건설 이루어져야 함. 가덕면 소재지 통과필요. 	상동	-
김00 (병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통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나, 귀 청의 제시한 안은 지역의 발전에 미비함으로 제 3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유00 (삼항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안으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동	○
현00 (인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3안에 의거 추진(진행)하여야 가덕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음. (인근, 보은~상주간 고속도로가 있는 관계로 3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동	-
오00 (노동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안 동의함 	상동	-
이00 (삼항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리~가덕면사무소 뒤 계산리 오층탑 뒤 계산리 저수지 터널(3안) 	상동	-
안00 (인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3안에 동회하며 가덕면 소재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위하여 3안을 적극 권합니다. 	상동	○
박00 (계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도로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뭐 어쩐다는 숫자계산은 잘 모르겠고, 새 도로를 개설한다면 지금도 많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도로를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현 주민의 불편함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동	○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공청회 개최
박00 (계산리)	○ 새로운 도로공사를 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만약 새로운 도로를 공사한다면 폭주족에게 편하게 운행하고 속도를 늘릴수 있게 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많지 않은 차량으로 새로운 도로건설을 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헐세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반대한다.	2차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4안(추가노선)으로 선정하였음	×
김00 (계산리)	○ 계산리 소방담에서 터널 청용리 바람꼐 방죽 터널 끝	상동	-
김00 (계산리)	○ 계산리 소방담에서 터널 청용리 바람꼐방죽 터널 끝	상동	○
하00 (계산리)	○ 피반령 굴을 나와 소방담 위부터 청용리 바람꼐 저수지로 터널	상동	○
이00 (계산리)	○ 피반령 굴을 뚫고 나와 소방담 위서부터 터널 가덕면 청용리 저수지로 나옴	상동	-
이00 (계산리)	○ 피반령 굴을 뚫고 나와 소방담 위서부터 터널 가덕면 청용리 저수지로 나옴	상동	○
박00 (계산리)	○ 회인으로 넘어다니는 차량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도로를 새로 공사를 해 가면서 도로를 공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 공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동	-
최00 (계산리)	○ 저는 계산1리 마을대표 최00입니다 보은-남일간 도로로 인해 마을 주민이 고령인 관계로 마을 회의 하여 회의내용 요약하여 회의 내용 뒷장에 첨부합니다 ○ 말미장터마을에서는 애초 계획된 도로를 계획을 한다면 말미장터 마을 주민은 살수가 없음을 밝히며, 현재 도로와 신설을 한다면 마을을 도로로 품어 싸안고 살아야 되는게 현실이 될 것이며, 현재도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주말에는 지붕 위에 제트기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도로는 더더욱 반대함	상동	×
정00 (계산리)	○ 현재 도로가 있는데 왜 예산 낭비까지 하면서 도로를 다시 내려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도로를 다시 내려하지 말고 기존도로에서 선형만 잡으면 예산도 덜 들고 기존에 있는 말미장터 마을은 피해가 없는데 기존도로 선형을 잡는게 더 용이하다.	상동	-
한00 (계산리)	○ 3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상동	-
김00 (계산리)	○ 비교3안으로 하면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비교1안으로 하면 계산1길, 2길, 수곡리 간에 고립이 되어 주민 원성이 많음	상동	○
하00 (계산리)	○ 보은~남일 도로건설공사 인한 가덕말미장터마을 필사적으로 반대입니다. 현재 도로 선형잡아 인차리 면사무소 앞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으로는 인정합니다	상동	-

2) 가덕면 2차

○ 2차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

-가덕면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의견 제출서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46명이었으며, 주민의견을 수용한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공청회 취하 의견제출서(46명 전원 서명)를 재제출함 →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가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위원장	○ 터널중점부 펜션부근에서 도로개설 후 운영시 소음피해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지 운영시 교통소음 예측을 통한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펜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펜션운영 주민	○ 도로가 생기는 인근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션과 신규도로가 가까워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거리 확보 및 노선 우회가능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및 운영시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펜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가덕면장	○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2차 주민의견 제출서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공청회 개최
박00 (인차리) 외 45인	○ 주민들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주민들의 원하는 곳으로 결정된 바, 공청회 개최를 취하합니다	-	-

3) 회인면

○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주민1 (보은군청 안전건설 과장)	○ 당초 주민설명회 당시 노선안과 현재 노선안과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당초와 변경없음	
주민2 (오동리 이장 서00)	○ 오동리가 마을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선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을에 진입로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오동리가 마을 앞 구간은 우회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마을 진입로는 기존국도를 활용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주민3 (눌곡리 이장)	○ 눌곡리 앞, 농로로 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곳은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구간이라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눌곡리 앞 버스정류장 구간은 지방도 571호선으로 본 과업 구간의 밖으로 지방도의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 사안임.	
주민4 (회인면장)	○ 중앙리 인도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인도확보 부탁드립니다.	○ 본 노선의 중앙리(회인면사무소 소재지) 구간은 회인천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구간으로써 기존 국도의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주민의견 제출서

성명	주민의견	조치계획	공청회 개최
우00 (오동리)	○ 오동4길 414-1~416 위치에 진출입로가 꼭 필요합니다. 거주자의 통행, 농사용 농기계 활용을 위해 마을 진출입로를 꼭 상의해 주십시오	○ 당해 지점의 교차로 계획(추가안)은 민원인(2가구)과 오동남시터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오동천을 횡단하는 교량2개소(오동2길, 오동4길)를 활용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존국도와의 연결을 위한 교차로와 연계하여 교차로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00 (오동리)	○ 오동리4길 414-1번지, 오동리4길 418번지 진입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 진입로 설치		-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가덕면 및 회인면 주민의견 제출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늘곡리~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사업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김 []	생년월일
	주소	충청북도 []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V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p>주민들에게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주민들의 의사와 뜻을 반영된바, 공청회 개최를 취하 합니다.</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p>			
2020년 7월 28일			
제출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복사지 80g/㎡)

공청회 개최취하 주민명단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박 []	[서명]	이 []	[서명]
신 []	[서명]	김 []	[서명]
이 []	[서명]	강 []	[서명]
김 []	[서명]	한 []	[서명]
정 []	[서명]	손 []	[서명]
이 []	[서명]	정 []	[서명]
염 []	[서명]	김 []	[서명]
신 []	[서명]	정 []	[서명]
정 []	[서명]	신 []	[서명]
신 []	[서명]	신 []	[서명]
남 []	[서명]	박 []	[서명]
신 []	[서명]	박 []	[서명]
전 []	[서명]	류 []	[서명]
신 []	[서명]	유 []	[서명]
박 []	[서명]	이 []	[서명]
신 []	[서명]	유 []	[서명]
신 []	[서명]	인 []	[서명]
최 []	[서명]	박 []	[서명]
신 []	[서명]	김 []	[서명]
오 []	[서명]	하 []	[서명]
인 []	[서명]	이 []	[서명]
연 []	[서명]	김 []	[서명]

가덕면 주민의견 제출서(취하) - 2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늘곡리~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사업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김 []	생년월일
	주소	충청북도 []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5동나갈 414-1 ~ 414-1 위치애 진입로가 꼭 필요하나라 거주자와 통행 통차용 농기계 활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V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p>주민 진입로 꼭, 협의해 주시도록</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p>			
2020년 6월 10일			
제출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복사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늘곡리~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사업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5동리 414-1 위치애 5동리 414-1 위치애 진입로 꼭 필요하나라 거주자와 통행 통차용 농기계 활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V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p>주민 진입로 꼭, 협의해 주시도록</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p>			
2020년 6월 10일			
제출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복사지 80g/㎡)

회인면 주민의견 제출서

2.2.2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가.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 총괄의견</p> <p>가. 본 계획은 보은군 회인면에서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구간 선형 불량 등에 따른 원활한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일부 구간 신설 및 기존 도로 개량하는 계획으로서, 이 검토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한 저감 방안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p>	<p>○ 초안 검토의견과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 방안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였음</p>	
<p>나. 관계 행정기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제시 및 반영 여부를 요약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p>	<p>○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하고, 미반영한 사유를 명시하였음</p>	
<p>□ 계획의 적정성</p> <p>가. 아래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대안별 구체적인 예측영향 등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p> <p>○ 사업과 관련된 계획입지·저감 방안 등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획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하여야 함</p>	<p>○ 환경적 측면에서 대안별 예측을 통한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음</p> <p>-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노선별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을 비교·제시하였음</p>	
<p>나. 환경보전 및 국토종합 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검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 국가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결과 연계되거나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p>	
<p>다. 해당 계획노선 인근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바, 도로개설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존 구간 내 사고이력(교통·사망사고 등), 현재 및 향후 수요 교통량, 비용편익비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계획(2016.12)」에서 경제성은 없으나(B/C:0.46, AHP:0358), 종합위험도는 연장비율 95.98%로 조사되어 시설개량을 통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p> <p>○ 기존 도로의 사고이력 및 수요 교통량을 제시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 입지의 타당성</p> <p>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계획은 지역 생태네트워크의 단절, 동·식물상의 이동과 확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도로사업계획을 계획할 경우 생태네트워크의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 노선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터널 구간의 확대 등 1등급 지역 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생태네트워크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의 생물군별 영향을 파악, 동·물이동 제약의 가중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보전계획을 수립·제시하여 최적의 노선 선정 ○ 노선별 동·식물상 법정 보호종의 출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문헌 조사에 따른 위치도를 제시하고, 가급적 계획 노선 내 보호수 등이 포함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와 같은 생태네트워크의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음 - 당초 회인터널의 연장을 L:760m → 1,050m로 연장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음 - 생태네트워크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의 생물군별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노선별 법정보호종의 출현 위치를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계획노선 주변 3주의 보호수 중 불가피하게 보호수 1주의 수관이 일부 포함됨 	
<p>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지질 측면에서 노선별 입지 대안 비교, 분석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의 세부적 자료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 주변 지형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별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 제시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대안별 사면의 위치, 형상, 연장,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형변화 현황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절·성토량, 절·성토고, 절·성토비탈면고 등) - 대안별 선형사업 지형변화지수(〔총토공량(m³)〕/〔도로연장(m)×도로폭원(m)〕)를 산정하여 지형변화의 적정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을 가급적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음 -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제시하였으며, 사면발생구간의 대표 횡단면도를 제시하였음 - 노선 대안별 사면부는 평면도 상에 제시하였으며, 대안별 절·성토량, 최대 절·성토사면고 등을 제시하였음 - 노선 대안별 지형변화지수를 산정하여 대안별 지형변화 적정성을 평가하여 제시하였음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다. 수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의 일부 구간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회인천, 오동천 등이 있으므로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개량, 도로포장 및 교량 신설 등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 계획노선을 관통하는 하천에 도로와 교량 신설 등으로 인한 토사 및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지반 내 중금속이 포함된 황철석 포함 여부를 조사하고 공사·운영 시 도로의 비점오염물질(산성배수 등)이 우수와 함께 하천 및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종류·설치위치·제원 등* 제시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 참고 ○ 수질오염총량 관련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으로 배출되는 단위유역별 부하량 산정내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지방하천인 회인천, 오동천 등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우수처리시설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본 계획에 부합하는 적정 시설을 계획·반영하겠음 ○ 실시설계시 비점오염의 배수유역을 산정하여 처리용량에 부합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 실시설계시 본 사업에서도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각종 시험결과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산성배수 등)이 우수와 함께 하천 및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 우수 배제계획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음 ○ 노선의 확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지 수질오염총량 오염배출부하량은 단위유역별로 부하량을 산정할 계획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시에는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p>라. 소음·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을 따라 다수의 정온시설(마을,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는바, 환경기준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맞게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등 별도의 저감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주변에 마을, 축사, 학교 등의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환경기준 초과지점은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교통소음에 의한 영향은 노선이 확정되는 환경영향평가지 예측을 통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마. 대기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운영 시 계획노선별 차량 운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함 <p>바. 기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 결과, 저감대책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의견을 첨부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은 그 적용 및 산정 근거를 제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일반현황 및 저감방안 등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 교통량 예측이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지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제시하였음 ○환경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지 본안은 가급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였으며, 예측 근거를 제시하였음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일반현황 및 저감방안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음 	

나. 충청북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본 계획은 당초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2002.5.11.)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2004.12.29.)를 완료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금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함</p>	<p>○본 계획은 당초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구.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기 협의완료한 사업이나,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할 예정임</p>	
<p>○계획노선 주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수달, 삿, 붉은배새매 및 원앙 등)이 서식 및 서식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출현·활동시기 등을 고려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계획노선 주변에서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어 활동시기가 활발한 여름, 겨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p>	
<p>○「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 및 「생물이동(생태통로)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2017, 환경부)」를 참고하여 야생동물 이동경로(통로)를 확보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	<p>○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 및 「생물이동(생태통로)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2017, 환경부)」를 참고하여 야생동물 통로 및 로드킬 대책을 수립하겠음</p>	
<p>○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 등 인·허가 시 개발(훼손)면적에 해당하는 협력금을 확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함</p>	<p>○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인·허가 시 해당 지자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겠음</p>	
<p>○사업추진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함</p>	<p>○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음</p>	

다. 청주시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도로건설공사(터널연장) 관련 환경적 요인(먼지, 토사유출, 소음·진동, 토양오염, 폐수 등)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도 인근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의 건강(안전) 및 재산상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필요</p>	<p>○본 도로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해 비산먼지, 토사유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항목별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p>	
<p>○공사 시행 시 생태계 및 자연환경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해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필요</p>	<p>○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여름, 겨울)하였으며 노선이 확정되는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인 생태통로 및 이식계획 등을 수립·제시하겠음</p>	
<p>○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폐유 유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계획노선 내 철거대상 지장물을 정밀조사하여 사전에 건설폐기물 적정보관 및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p>	<p>○임목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으며, ○폐유저장소 주변 토양조사를 통해 폐유 유출 여부를 점검하겠음 ○또한, 지장물조사를 통해 석면, 분뇨, 건설폐기물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 처리하겠음</p>	

라. 청주시 상당구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분류식 하수관거연결 지역이거나 오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현장사무소 등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시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음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시 제외</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예)터널굴착 공정에서 발생하는 돌가루 등이 함유한 굴착수는 폐수에 해당됨</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배출시설에 해당될 시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겠음</p>															
<p>○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 1,000㎡ 이상, 굴정공사 연장이 200m 이상인 경우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p>	<p>○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겠음</p>															
<p>○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규모 사업과 규모에 해당하고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217 1249 756 1518"> <tr> <td colspan="2" data-bbox="217 1249 756 1317">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제21조 제1항관련)</td> </tr> <tr> <td data-bbox="217 1317 459 1350">1. 향타기, 향발기</td> <td data-bbox="459 1317 756 1350">2. 천공기</td> </tr> <tr> <td data-bbox="217 1350 459 1384">또는 향타향발기</td> <td data-bbox="459 1350 756 1384">4. 브레이커</td> </tr> <tr> <td data-bbox="217 1384 459 1417">3. 공기압축기</td> <td data-bbox="459 1384 756 1417">6. 발전기</td> </tr> <tr> <td data-bbox="217 1417 459 1451">5. 굴삭기</td> <td data-bbox="459 1417 756 1451">8. 압쇄기</td> </tr> <tr> <td data-bbox="217 1451 459 1485">7. 로더</td> <td data-bbox="459 1451 756 1485">10. 콘크리트 절단기</td> </tr> <tr> <td data-bbox="217 1485 459 1518">9. 다짐기계</td> <td data-bbox="459 1485 756 1518">11. 콘크리트 펌프</td> </tr> </table>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제21조 제1항관련)		1. 향타기, 향발기	2. 천공기	또는 향타향발기	4. 브레이커	3. 공기압축기	6. 발전기	5. 굴삭기	8. 압쇄기	7. 로더	10. 콘크리트 절단기	9. 다짐기계	11. 콘크리트 펌프	<p>○공사시 굴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므로 공사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p>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제21조 제1항관련)																
1. 향타기, 향발기	2. 천공기															
또는 향타향발기	4. 브레이커															
3. 공기압축기	6. 발전기															
5. 굴삭기	8. 압쇄기															
7. 로더	10. 콘크리트 절단기															
9. 다짐기계	11. 콘크리트 펌프															
<p>○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p>	<p>○「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생활소음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겠음</p>															
<p>○법 제 1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 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공사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p>	<p>○지장물조사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겠음</p>															
<p>○임목폐기물(나무뿌리, 줄기 등)이 5톤, 쇼크리트 등 폐기물이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 발생 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하여야 함</p>	<p>○본 사업의 공사시 임목폐기물, 쇼크리트 등이 발생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실시하겠음</p>															

마. 보은군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철석을 함유한 암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황철석함유 암석은 공기와 접촉 시 산성수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으므로 우수와 접촉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시 본 사업에서도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각종 시험결과에 따라 황철석 함유 암석은 우수와 접촉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일 보은간 도로건설공사 노선 선정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 정맥 및 지맥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인터널의 연장(760m → 1,050m)을 변경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회피하였으며, 팔봉지맥은 터널구간으로 직접적인 훼손은 없도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노선에 위치한 지역에 추진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사업들을 확인하여 추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추진중이거나 개발예정인 사업들을 확인하여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하고 선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안별로 항목별 장·단점 비교평가, 협의기관,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수질 및 소음·진동, 토양 등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단계는 노선 선정단계로써 각 항목별 정성적인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지 정량적인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계 교란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등 개정된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주변환경 및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특성으로 고려하여 동·식물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신 환경기준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지서 본안을 작성하였음 또한,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제출서 및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및 취수장 현황, 산업단지 현황, 정수장 현황 현재시점으로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보호구역, 취·정수장, 산업단지 등의 현황은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음 	